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3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5. 24.
4. 회부일자 : 2019. 5. 30.

II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III . 주요내용

1. 목적 (안 제1조)
2. 지급대상, 지급액 (안 제2조, 별표)
 - 지급대상

-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3. 지급일, 지급방법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 급 일 :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4. 적용시기 (안 부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5월 1일 이후부터 적용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9. 4. 24. ~ 5. 14.):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731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¹⁾ 따라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²⁾ 따라 「유아

-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
-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등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따른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겸임수당 지급시점(2019.5.1.,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겸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학교 등 214개교의 지방공무원 1,077명에 대해 이미 겸임발령을 하였습니다.³⁾

이는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겸임수당 지급범위와 지급액 등에 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들의 행정공백 및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필요함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의회 심의 이후부터 겸임수당이 지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겸임발령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

4. 겸임(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
※예 : 초등학교 행정직 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적 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
-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공무원 겸임수당으로 4억 4천만원(1,100명 기준)을 편성하였음.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8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을 감안하여 검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검임기관의장이 정한다.